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10:00		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	책임자	과 장 이용일 (044-205-3731)
	재정협력과	담당자	서기관 장현석 (044-205-3769)

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

- 행안부,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2월 7일(수) ‘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’를 개최하여 자치단체·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·발표하였다.
 -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(제56조)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·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, 2011년 도입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다.
 - 이번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, 자치단체·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이번에 논의된 자치단체·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① 단기 유동성 대응, ② 지방채무 관리 강화, ③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.

< 1. 단기 유동성 대응 >

- 지난 11월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*한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.

* (보도자료 배포) 지방채·공사채 적극 상환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도모('22.11.9.)

<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(11.9.) >

- ❖ (채무상환) '22년말·'23년초 만기도래 지방채·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 -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로,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
- ❖ (공공자금 지원) 지방채·공사채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 보다 낮은 공공자금 (7,700억원) 우선 지원 ※ 특히, '23년 1/4분기 만기도래 채권 우선 지원
- ❖ (신규발행 최소화)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·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 최소화(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 조달)

< 2. 지방채무 관리 강화 >

- 다음으로,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,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를 강화한다.
-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*할 예정이다.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다.
* (차환채 한도외 인정비율) '19년25%, '20년100% → (목표) '24년80%, '25년50%, '26년30%
-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, 금액·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,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,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< 3.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>

- 이에 더불어,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.
-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,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.
-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·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,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최근 고금리,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”라며, “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위원회 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	책임자	과 장 이용일 (044-205-3731)
		담당자	서기관 장현석 (044-205-3769)
<지방채>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홍성철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 홍성우 (044-205-3704)
		담당자	사무관 허 정 (044-205-3721)
<공사채>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	책임자	서기관 권오수 (044-205-3985)
		담당자	사무관 이범수 (044-205-3990)
<제도개선>	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 서정훈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 홍성권 (044-205-3763)
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익 (044-205-3961)
		담당자	사무관 박현우 (044-205-3962)

